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 정비》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74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제221027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 정비(안 제34조의3제1호)	2

I.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제221027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보운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30.

다. 회 부 일 : 2025. 5.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제1호).

3. 검토의견

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 정비(안 제34조의3제1호)

현행	개정안
제3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 5. (생략)	제3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 ----- -----. 1.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2.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4조의3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²⁾ 위원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둔다.

장은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그런데, “심신장애”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참조).

이에, 개정안은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취지의 입법임.

그런데, 개정안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심신장애(心神障礙)”는 의학적 용어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함.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에는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이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10조³⁾는 “심신장애인”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로 정의

3)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하고 있고, 구 「심신장애자복지법⁴⁾」는 “심신장애(心身障礙)”를 ‘지체불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으로 정의한 바 있음.

현행법의 “심신장애”는 사전적 의미인 정신적 질환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한자가 병기되지 아니하여 구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입법례인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중의적인 용어의 정비⁵⁾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됨.

다음으로, 개정안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판단기준을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현행법의 “심신장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판단기준의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음.

그런데, 「의료법」 제21조제2항6)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4) 구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제명이 변경(1989. 12. 30. 시행)되었음.

구 「심신장애자복지법」 [법률 제375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지체불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등 정신적 결함(이하 “心身障礙”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 번째판(증보판), 2023. 12., p.6

- 법령은 국민 생활의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영향을 미치므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게 한다.

6)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생략)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됨.

이에, 해촉 대상자인 위원이 본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촉 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위원장이 대상자를 해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의 개선 필요성, ② 중의적 용어의 정비 필요성, ③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판단기준으로 적정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을 통해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확성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지만,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은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법 조항의 실효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심신장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들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심신장애” 용어 정비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

연번	구분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발의일
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03)	법제사법위원회	2025. 4. 21.
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35)	정무위원회	2025. 4. 22.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66)		2025. 4. 30.
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67)		2025. 4. 30.
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18)	기획재정위원회	2025. 4. 22.
6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19)	교육위원회	2025. 4. 22.
7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37)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2025. 4. 22.
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61)		2025. 4. 30.
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02)	국방위원회	2025. 4. 21.
1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42)	행정안전위원회	2025. 4. 22.
1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58)		2025. 4. 30.

연번	구분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발의일
1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38)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2025. 4. 22.
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57)		2025. 4. 30.
14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34)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2025. 4. 22.
15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69)		2025. 4. 30.
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72)		2025. 4. 30.
17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33)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25. 4. 22.
1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65)		2025. 4. 30.
1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43)	환경노동위원회	2025. 4. 22.
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63)		2025. 4. 30.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36)	국토교통위원회	2025. 4. 22.
2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74)		2025. 4. 30.
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73)		2025. 4. 30.
2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75)		2025. 4. 30.

주) 2025. 5. 30. 기준

문 의 처
02)6788-5590